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거버넌스 이론의 활용에 대한 연구*

심영섭** · 김동규***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의 지향성과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 교육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실재적 배경을 고찰하여 미디어 교육의 거버넌스적 이해를 위한 분석 모형으로서 쉬만크의 지향-질서-행위이론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을 운영하는 세가지 기준에 의거 미디어 교육의 구조와 행위, 결과,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교육 정책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지향-질서-행위형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행위적 협력'의 이념 지향, 사회정치적 변수를 합리적 정책 시스템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미디어 거버넌스, 미디어 교육, 정향-질서-행위 모형, 신제도주의

1. 서론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는 미디어 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였거나 준비했다. 그 가운데 2007년 4월 4일 이경숙의원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미디어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경숙 의원은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미디어에 대해서도 교육의 대상으로 폭을 확대함으로써, 종합적인 미디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미디어교육진흥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야의 의견 차이는 거의 없었다. 미디어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춘 능동적인 수용자를 양성하고, 청소년의 미디어활용 능력제고 및 미디어 폐해 최소화, 미디어 제작교육을 통한 청소년 창의력 향상과 자신감 고취, 지역·계층간 정보격차의 해소와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법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을 둘러싸고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육학과 교육부, 교과서 출판 관련 업계가 한 축을 형성하고, 그 반대쪽에는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연구에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디어관련학회와 언론사, 관련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고, 상호간의 협력이나 지원이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경숙 의원의 법안을 살펴보면 더 구체적인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입법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역시 미디어교육시설의 지정과 미디어교육사 자격인증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였다.

* 이 논문은 2012년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 지원을 받았음.

** 주저자,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onroad5@kku.ac.kr)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kdg810@kku.ac.kr)

법안의 핵심인 미디어 교육(media in education)의 중요성은 미디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세상은 인간이 개척한 문화적 공간이지만, 매체를 통해 이를 인지하는 개인에게는 간접적인 경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개인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보다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가 더 많아진다(김양은, 2001; 김기태외, 2007). 즉 인간이 자신이 소속된 사회변화에 대해 인지하는 대다수의 정보는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미디어가 반영하는 현상형태에 대한 기술에 더 의존한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이조시대 추노꾼의 세계를 알고, 영국 프로축구 경기결과와 뒷이야기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배회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찾는 미디어의 세계는 개개인이 경험한 세계보다 더 강하고 인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Kracauer, 1939).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간접경험은 최근 들어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복잡하게 변화했다. 디지털화는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미디어종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또한 누구나 디지털기술에 대한 약간의 이해력과 능력만 갖추면 이용자변형정보(User Generated Content)를 만들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의 저장자와, 이용자, 생산자와 이용자, 소비를 위한 단말기와 생산을 위한 설비의 차이가 모호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미디어수용을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 구텐베르크은하계에서 디지털은하계로 이동하게 만든다(Bolz, 1993).

인간은 구텐베르크의 시대부터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인지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인식능력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능력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배가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방법을 가르치고 확대시키는 것이 곧 미디어 교육이다. 미디어 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그리고 가정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교육은 한 사회의 차세대 노동력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그 사회가 축적해온 문화적 자산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기초교육에 해당하며,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래서 학교교육은 통상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검정교재를 인증, 관리하며, 교과과정도 통치(government)를 위한 수단이자 국가정책의 하나로 반영한다. 그러나 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필수가 아닌 선택이며, 학교교육을 마친 성인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과학, 지식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교양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선택적이지만, 노령화사회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육은 국가나 사회가 수행할 수 있는 공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영역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교육이 통치의 한 부분이라면, 사회교육은 민간영역에 있는 행위자(혹은 대상집단)가 교육과정개발과 운영에 교육주체로 참여하는데, 교육과정개발과 운영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보다는 협치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정교육의 경우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소외계층, 맞벌이부부 등 가정교육에 사적으로 시간과 비용투자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학교교육인데, 학교교육으로서의 미디어 교육은 교재제작과 미디어제작교육, 미디어비평 등이 기존의 교육학영역이라기 보다는 미디어영역으로 교육계와 언론계가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미디어교육진흥법 제정에 실패한 원인의 하나는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찾지 못한데 있다. 미디어교육은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을 위해 현장 교육을 담당할 교육계와 관련

학회,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재와 교육방법을 설명해줄 언론사와 언론학회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정부나 정치권이 일방적인 정치적 정책적 통치행위의 하나로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교육을 목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안을 제정하는 일은 성공하기 어려움을 이미 2007년에 경험했다. 결국 미디어교육의 범위와 방법, 형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치적 의견 차이보다는 미디어교육 주체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경쟁과 견제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법안제정에 실패한지 근 5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의 영역과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에서의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거버넌스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모저(Moser)는 미디어 교육의 목적을 ‘미디어능력’의 배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능력의 배양을 위해 모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1999, pp. 64-67). 첫째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언어적 코드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며, 무엇이 진정한 미디어의 코드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래서 둘째로 미디어가 내세우는 입장(논의의 출발점)을 이해하고, 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며, 셋째로 정보생산과 전달의 전략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정보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모저는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행간읽기를 통한 취사선택에 있다. 그는 이러한 교육은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파델리(Bonfadelli)는 미디어를 통한 교육은 지식교육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인지능력을 떨어뜨려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비판적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본파델리는 효율적인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직접경험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인지하는 미디어의 현실을 수용자가 자신이 아직까지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마치 경험한 세계 처럼 인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인 미디어 이해 능력과 현실 인지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Bonfadelli, 1994).

이에 대해 바케는 ‘미디어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미디어 교육을 네 가지 차원에서 나누고 있다(Baake, 1999, p.34). 첫째는 미디어비평으로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며 반응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미디어활용 교육(예를 들어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 익히기)이 필요하며, 셋째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하여 소비하고,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미디어 소비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미디어 콘텐츠 만들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싱(Massing)은 여기에 덧붙여 “미디어정치 시대에 시민들은 기본적 능력으로 정치현상과 사회를 이행하

기 위해 ‘미디어이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01, p.39).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미디어를 취사선택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Massing, 2001,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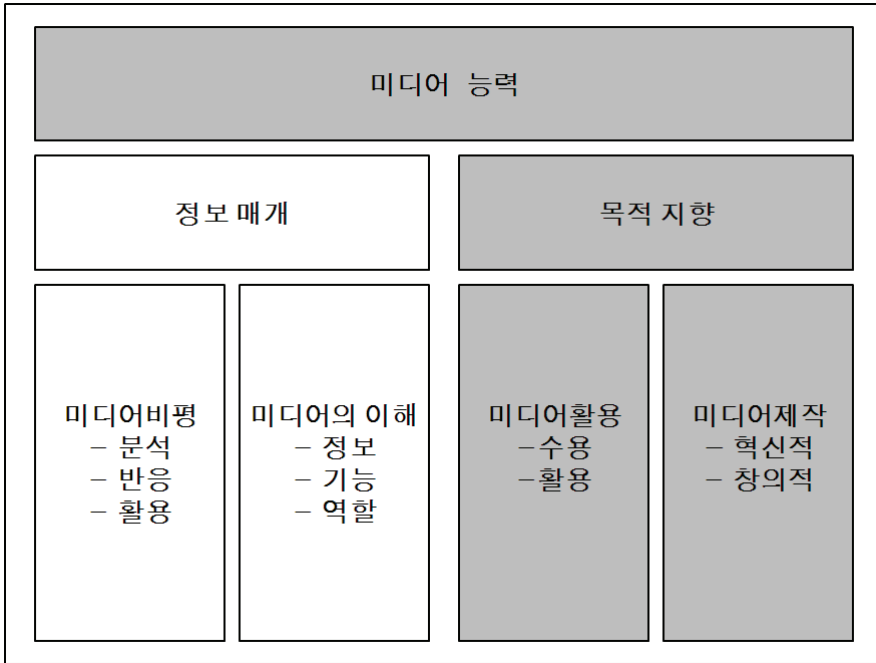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간략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이는 미디어교육의 범위가 이미 정치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했으며, 기존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복합적으로 융화했기 때문이다(Moser, 1999, p.214이하). 또한 디지털 환경의 등장과 함께 미디어 교육의 행태도 크게 달라졌다. 미디어 교육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될 당시는 미디어교육은 곧 ‘신문을 활용한 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넘어서 신문과 인터넷, 동영상, 모바일 등 다양한 미디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의미가 넓어졌다. 최근 들어 언론사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에서 이용자가 SNS를 통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활동도 교육의 한 부분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생산은 이제 기자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참여하는 열린 구조이다. 언론사는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지능력을 키우는데 주목적을 두었던 초기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이제 방송영상물 제작과 비평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디어를 어우를 수 있는 미디어활용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창의성 계발을 교육의 중요한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은 인류사회가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후진양성의 기초이다. 이러한 인재는 교과서를 단순암기하거나 수리적인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매체의 발달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자가 정보를 찾아서 취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이 찾은 정보를 지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교육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Bolz, 1993). 또한 학생이 아닌 직장인이나 연금생활자 등 일반인들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적인 소비자를 확보하는 방안이자, 무지로 인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지털시대의 미디어 교육은 교육현장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화 시대의 모든 영역에서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정보 활용 능력과 냉철한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주로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이용한 미디어 교육을 학교교육의 보조교재로 사용하거나 취미생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신문과 방송, 웹사이트 등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재가공하거나 직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미디어 체계에 대한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획일적이고 대학 입시 논리에 맞춰 논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이나 주로 멀티미디어제작능력을 가르치는 사회교육으로서의 미디어 교육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

가 있다. 디지털시대의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제작, 미디어비평, 미디어이해,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걸쳐 폭넓은 미디어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미디어 교육은 교육목적에 따라 학교에서는 미디어 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제작,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사회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제작과 같이 소비자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 사회교육은 정규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교육학습이라는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정보기술과 미디어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그 내용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생 동안 가르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교육시키고,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비자를 만드는데 있다.



<그림 1>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교육의 체계

미디어 활용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첫째는 미디어비평으로 수용자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며 반응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미디어 활용 교육(예를 들어 사회과목이나 역사 과목의 수업을 위해 미디어에서 보도한 내용을 활용하여 사례를 찾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정보를 얻는 법 익히기)이 필요하며, 셋째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수용하여 소비하고,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소비 교육이 필요하고, 넷째로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미디어 제작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섯째로는 미디어정치 시대에 시민들은 기본적 능력으로 정치현상과 사회를 이행하기 위해 ‘미디어 이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교육의 목표는 간략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는 미디어활용교육의 범위가 이미 정치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서 매우 세분화되고 중층화했으며, 기존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복합적으로 융화하여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미디어활용교육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협력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제도와 거버넌스

(1) 제도

미디어교육 정책도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다. 제도는 “행위자가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하면서 행동할지를 알도록 하는 것”(Schimank, 1992, p.170)인데, 이때 행위자들의 행동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범위와 가능성도 제시한다. 행위자는 제도로부터 독립적으로 인지하고 목적을 지향하거나 행태를 보일 수 없으며, 오히려 제도가 행위자들의 행태를 규정한다. 그래서 제도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합리화한다(Scharpf, 2000, p.78). 또한 제도는 인간의 행위를 규칙화할 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의 교육을 기대한다. 결국 모든 제도적 규범은 행위자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며, 그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깨닫도록 한다(Schimank, 2000, p.245).

그러나 제도를 세밀하게 정의하면 제도의 유연성과 가변성을 제약하여 ‘제도’의 개념을 박제화할 수 있다. 제도는 사회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복잡성을 띠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정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정의마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9시 저녁뉴스’를 제도라고 부를 수 있듯이 시골 장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5일장’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제도로서 동질성이나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제도라는 틀에서 연구하는 게 가능한데, 이는 ‘9시 저녁뉴스’와 ‘5일장’의 사회적 관계와 행위유형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상호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제도는 “시공간적 관점에서 동일성과 규칙성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조화시켜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질서를 유지시켜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Zapf & Dierkes, 1994, p.9)시켜준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인간 사이의 협력관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있다”(North, 1992, p.6). 제도를 통해 인간은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과 규칙 그리고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행위와 같이 모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행위에 대해 제도는 준거의 틀을 제시한다. 만일 한국의 제도와 일본이나 중국의 제도를 비교한다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제도가 다른 국가의 제도가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행위규범과 규칙을 정교화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히터와 그의 동료들은(Richter & Furubotn, Streisser)은 “제도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규칙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1996, p.7)고 주장하는데, 노어스(North)는 이러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규칙을 제한하거나 실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1992, p.11). 그래서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도는 행위양상은 비슷할지 몰라도 사회적 정당성과 합의가 있는냐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제도라고 부르는 것에는 사회적 제재라는 일종의 행위기대치가 있다. 이러한 행위기대치는

한명 또는 다수가 자신의 행위나 태도를 통해 얼마만큼 실천하느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를 규범화하는 것을 제도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행위자는 사회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규범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DiMaggio & Powell, 1991, p.10). 이러한 경향은 의회 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이 통치행위로서 결정하거나, 선거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정당)이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방식이 있다. 또는 모든 결정에 앞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행위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디마지오와 파워(DiMaggio & Powell)은 제도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행동의 산물이지 행위자가 설계한 산물”은 아니라고 본다(19991, p.8). 디마지오에게 제도는 행위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하지만, 동시에 제도화 과정에서 행위자는 제도에 의존하고,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제도에 대항하면서 영향을 받는다(DiMaggio, 1988, p.13). 즉 제도의 발전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작용한다. 제도가 한번 생성되면, 제도는 자체적인 생명력을 얻고, 자체적인 동력을 통해 발전하는 경로의존적(path-dependence)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조직과 제도로부터 피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제도는 제도를 창설한 설립자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진화하며, 이때 이해관계자의 의식과 관념,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에 의하여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경로형성(path-shaping)도 나타나기 때문이다(Donges, 2007, p.274 이하). 이러한 제도의 제도화 과정에서 정책의 형성이 제도의 재귀적 역동성을 강조할 경우 경로의존을 강조하게 되지만,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면 경로형성에 주목한다.

(2) 거버넌스

이러한 제도의 틀에서 실천적인 지침을 만드는 행위를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구된 과학적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내린 미래의 활동지침(권기현, 2008)”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책은 국가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적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규칙을 공표하고 이를 수행하는 통치(Government)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가와 사회부문의 융합과 중첩, 사회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사회구조와 기능의 분화와 다양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등으로 국가와 시장, 사회의 총체적인 행위형태가 일방적인 통치만으로는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협치 :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행정을 대체하지는 않으며(이명석, 2002, 335), 오히려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을 줄이고 유동적인 사회현상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국가가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거버넌스 이론의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 논의는 아직까지 매우 파편적이고 모호하다. 행정학과 정책학, 문화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하고 있지만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점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이론(Theory)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페노메논(Phenomen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 개념만으로 조직과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이론이 유용한 것은 통치적 개념에서의 정책보다는 정책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형동질구조(metamorphosis) 상황에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운용을 위한 유효한 접근 방법이기 때문이다. 구이만(Kooiman, 1993)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의 탈산업사회와 포스트모던적

인 사회변화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새 방식으로서 조정(coordination),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의 기제를 요구한다고 정의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형동질구조가 증가하면서, 국민은 주주로서 대리인인 공공부문, 나아가 정부와 국가에 대한 감시와 요구, 그리고 청렴도와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운영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했다.

거버넌스 이론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공공부문의 행정관리를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통치보다는, 사회체계에서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형성된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국가행정의 확대와 민간부문과의 융화현상이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행정현실의 변화를 통치(government)라는 개념으로는 더 이상 적절히 기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협치의 개념이 필요하다.

피에르와 피터스(Pierre & Peters, 2000, pp.6-7)는 거버넌스를 정부가 ‘내·외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과 사회운영의 변화’하는 행태로 정의한다. 덴하르트와 덴하르트(Denhardt & Denhardt, 2007, p.86)는 거버넌스를 ‘공적 권위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구조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정부와는 다르다고 보았다. 김석준(2000, 80)은 거버넌스는 대의 민주주의시대에 전통적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접근으로 보고, 시민사회와 국가영역, 시장의 보다 대등한 상호작용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체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논의로 보고 있다.

이렇듯 거버넌스에 대한 광범위하고 느슨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거버넌스를 “정부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않고,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과정에 대하여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미래의 활동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또한 미디어 거버넌스는 이러한 거버넌스가 ‘미디어교육’에서 실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거버넌스를 어떠한 모습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또한 거버넌스 모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인이나 변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부가 어떻게 다른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관련을 맺어야 하는지와 이러한 관계속에 효율적이고 효용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미디어 교육이 사회적 제도의 하나로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전제를 근간으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제도는 행위자와 사회구조간의 역동성(dynamic)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발전한다(Schmank, 2000). 그는 제도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행위자와 제도, 체계가 상호 협력하면서 유지된다고 보았다. 첫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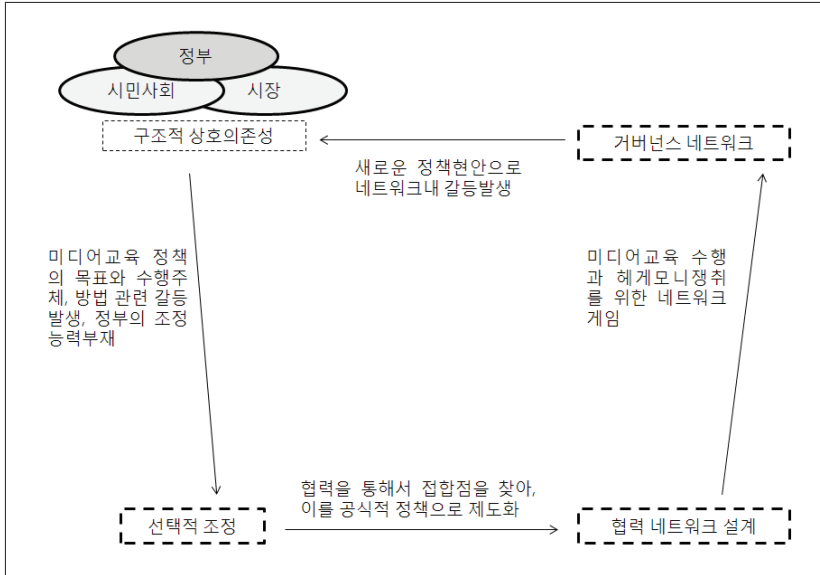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본다면, 이 체계는 정치체계, 경제체계, 미디어 체계 등 수많은 부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체계가 지향하는 행위양태는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의지(Wollen)이다. 예컨대 정치체계는 권력쟁취를, 경제체계는 이윤을, 미디어는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각 체계에는 질서가 존재한다. 이때 질서는 체계를 유지하는 각종 규범과 규칙, 관습, 윤리로 당위(Sollen)이다. 이러한 당위는 제도를 유지하는 기초이다. 셋째로 행위자이다. 행위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며, 이를 성취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실패하기도 한다. 행위자는 사회 구조에서 스스로 성공하거나 실패할 가능(Können)이 있다. 이러한 세가지 다양한 사회적 구조의 차원들이 하나의 협업적 관계로 묶여있는데,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사회와 질적인 차별이 나타난다.

<연구문제 1> 사회적 제도의 하나인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수립과 운용을 위해 어떠한 행위자집단이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는 행위자집단의 목적은 무엇인가?

만일 행위자집단과 그들의 참여 동기를 파악했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허팅(Hertting, 2006)은 효율적인 거버넌스 형성모형으로 네트워크 디자인 전략을 제시했다. 허팅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상호 의존적 행위자가 일정한 형태와 목적을 갖추었지만, 각 행위자마다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를 드러낼 때, 다른 행위자와 협력을 시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독립적 행위자로 남지만,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상호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행위자간의 의존도는 공식적인 의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상호의존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결국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략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또다시 다른 주체와 다른 목적을 두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진 거버넌스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중첩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허팅은 자신의 거버넌스 모형에서 정책주체가 정책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일 때, 정부와 구조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시장과 시민사회라는 민간부문과 선택적 조정이라는 협력행위를 통해 공식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이를 운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다른 현안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짜일 때 하나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Hertting, 2006).

<연구문제 2> 거버넌스를 통해 합리적인 미디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탐색을 위해 슈만크와 허팅의 제도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했다.



<그림 2> 미디어 교육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그림 2>에서와 같이 미디어 교육과 관련하여 주요 행위자인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는 구조적으로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는 정부는 명령과 규제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지만, 미디어 교육과 같이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에는 정책의 목표와 실행주체, 방법을 두고 행위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의 부족으로 정책적 목표와 대안이 부재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서로 간에 찾을 수 있는 접합점을 찾아서 선택적 조정을 하여 공식적으로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된다. 이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협력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역할분담을 하는 네트워크 설계를 하게 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축이후에도 끊임없이 미디어 교육의 주도권과 방법을 두고 헤게모니를 쟁탈하려는 경쟁이 진행되는데, 이를 네트워크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버넌스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현안이 등장하여 이해당사자인 행위자간에 갈등이 증폭되면, 다시 선택적 조정을 한다. 결국 미디어 교육이 제도적 질서로서 다양한 관련법규를 통해 사회의 부분체계로서의 정당성을 추인 받으려면, 이러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을 위한 행위자가 규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조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경쟁은 상호의존적인 행위자가 미디어 교육을 위한 체계의 의지를 당위로 성립시켜야만 한다. 쉬만크는 이를 ‘재귀적 이해관계(reflexive Interessen)’로 정의한다. ‘재귀적 이해관계’는 한 체계가 사회구조에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도적 질서가 제시하는 규범과 규칙,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Schimank, 1992, p.170). 예를 들어 미디어 체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질서는 저널리즘적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규정과 언론중재법, 취재과정에서의 윤리적 실천강령 등이 존재한다. 미디어 교육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규범은 법률이 될 수도 있고 관습이나 경제적 이익일 수도 있다. 특히 미디어 교육에 행위자로 참여하는 언론사와 교육교재출판사 등이 경제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각종 규제조항과 상거래 윤리를 지켜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버넌스의 공적인 공감과 경제적 성공,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어떻게 획득되는가? 결국 이러한 영향력은 미디어 교육의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에 의해 결정된다. 행위자는 미디어 교육이 지향하는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질서가 부여하고 있는 당위적인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지를 관철시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결국 행위자의 성공 가능 여부는 행위자가 가능성을 미디어 교육의 의지와 제도적 질서의 당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율적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문제를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적인 이론연구로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를 통해 미디어정책을 연구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Trappel, 2007, p.257). 첫째는 미디어와 저널리즘의 이론적 연구로, 대중매체가 ‘제4부’로 권력형성 및 정책추진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형과 그 결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권력과 영향, 투명성과 공익적 책임 등을 지수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수로 표시하거나 산출하기에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거버넌스가 정치적 규제적 도구로 실행되는 행위(Praxis)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미디어의 저널리즘적 실천과 이러한 실천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의 구현 정도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 번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도구에 대한 탐색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제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이어서 미디어 교육을 위한 정책도구로서의 거버넌스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을 가지고 미디어 교육의 정책적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했다.

4. 연구결과

1) 결과 1: 미디어 교육의 주체와 목적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교사가 학교수업을 위한 부교재로 주교재의 평면성을 보완하기 위해 미디어를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교육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미디어제작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는 미디어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이세노(Weisseno)의 주장처럼 ‘좋은 미디어는 스스로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좋은 교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2001, p.21). 이를 위해서는 교사는 이미 17세기에 글과 그림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위한 재교육과 자격검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미디어활용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일차적이

며, 이어 이러한 교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연계된 대표적인 행위자는

- 정책당국(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 연구 및 지원기관(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교육학회, 미디어교육학회 등)
- 행위자집단(교사 및 언론사)
- 이익집단(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 경제집단(교재 출판사, 신문사, 논술교재 개발부서, 방송사 미디어교육교재 개발부서, 논술학원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호간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다. 첫 번째로 미디어 교육과 관련하여 정책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이들 정부부처는 각각 업무의 영역이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을 책임지며,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통합한 전인교육을 위해 교재를 개발한다. 반면 문화관광체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교재를 개발하는 부서는 아니다. 그러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학습보조교재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디어교육센터를 운영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사의 신문 활용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미디어교육에 대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의 하나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에 지역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시청자가 미디어영상을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이 미디어에 대한 창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을 배움으로써, 미래의 수용자를 교육하고,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미디어 교육에 참여한다면, 문화관광체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지원정책과 소비자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에서 인성교육과 지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에서 미디어를 비롯한 미디어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정규교과목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정규교과목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교재정도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미디어 교육이 실시될 수도 있고, 아예 외면당할 수도 있는 현실이다(김동규·심영섭, 2010). 반면 언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학생들이 미디어읽기와 쓰기, 제작하기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래의 소비자를 교육시키려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림 3> 미디어활용 교육을 위한 주요 행위자집단

둘째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진흥과 산업진흥을 위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도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학교교육의 교육목적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신문과 방송은 언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외계층 및 산간지역 신문구독지원, 우편료지원, 신문읽기 및 쓰기교육, 영상미디어 체험, 영상제작 등의 지원이 있다. 이러한 기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학회로 교육학회와 언론학회, 방송학회 등이 있는데, 최근 미디어교육학회가 두 학회의 서로 다른 연구목적과 대상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연구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하여 발간된 고등학생을 위한 『미디어와 사회』교재는 교육학회와 언론학회 소속의 학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상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계와 언론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관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재제작의 독점권을 갖고 있던 교육계는 언론계의 발 빠른 미디어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을 비롯한 미디어교육의 강화를 명시한 만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미디어 교육은 정규과목이나 수단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로만 상정한다.

세 번째는 행위자집단이다. 미디어 교육의 행위자집단으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사의 재량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사가 개별 학과목과 학생교육의 연구방법은 배웠지만,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배웠거나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을 배운 것은 아니다. 미디어의 이해와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미디어제작교육을 모두 수행하려면 교사들의 지속적인 미디어활용능력교육이 1차적으

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의 이해의 경우에 교재개발에 직접 교사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겠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위한 교재나 보조교재 개발에는 직접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미디어교육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일선 교육현상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미디어 교육의 또 다른 주체는 언론인이다. 언론인들이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급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최근 일간신문의 NIE제작부서와 교사들의 NIE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효율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의 경우에 한라일보와 제주NIE학회가 공동으로 교재개발과 신문지면개발에 협력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 강원일보와 강원NIE연구소, 강원도 내 각 급 학교 교사들의 모임이 공동으로 교재개발과 신문지면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전국일간신문도 신문사의 NIE부서와 학부모, 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미디어활용 교재개발과 신문지면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지역일간신문이 좀 더 학교교육 중심으로 연구한다면, 전국일간신문은 논술교육 및 교육교재개발보급을 통한 새로운 수익사업과 미래 독자 확보 차원의 전략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방송의 경우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지역에서 방송미디어를 체험하고 시청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교육과 장비대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미디어교육사이다. 우리나라 미디어교육사 또는 NIE강사는 민간이나 정부산하 기관이 일정한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미디어교육사나 NIE강사는 국가가 발급하는 검정자격이나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이렇게 배출된 인력은 사회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에는 참여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학교교육으로서의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능력과 학습법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디어교육을 위한 전문화와 교육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행위자집단에 중요한 참여자로 학생과 학부모를 들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정책과정에서 수동적인 집단으로 비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화와 쌍방향 매체의 발달로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에 대한 설계와 정책적인 결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가 중요하다.

넷째로 이익집단으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학부모연합이 교육계 쪽의 이익을 대변하고,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이 있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한국교총과 전교조, 학부모단체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일선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교원단체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미디어 교육의 실시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비교적 미디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초등학교보다 상급학교 진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 예상문제집을 풀거나 논술준비에 도움이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게 어렵다. 학부모단체의 반발도 크다.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가입단체에 따라서 미디어 교육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반면 한국신문협회나 한국방송협회는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의 경우 별도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미디어 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들은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이 성과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는 많지 않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대학입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이 직접적으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교육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더 많다. 결국 이익집단이자 행위자집단인 교사를 중심으로 한 단체가 직접적으로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익집단 가운데 교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집단이 있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은 논술교육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대학입학시험이 자기소개서 작성과 논술시험의 비중이 커지면서 교재출판사와 신문사, 논술학원 등은 미디어 교육을 논술교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육방송인 EB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교육을 위한 미디어활용교재를 대학입학시험을 위한 논술 교육 교재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집단의 이해관계는 당연히 교재출판을 통한 수익증대에 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을 쓰기교육의 하나로만 이해한다. 그러나 앞서서도 살펴보았듯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비평,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미디어제작으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합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중고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에서 학보사 기사를 채용하지 못하거나, 연중 수시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디어제작이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마저도 교육의 일부라기보다는 귀찮고 자기시간을 빼앗기는 소모적인 노동으로 인식되는 추세이다. 특히 미디어교육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관계는 ‘교육적 목표’에 대한 실천보다는 정치적 영향력과 미래 소비자 확보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익에 더 충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미디어교육 거버넌스에서 협치가 강화되어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 결과 2: 미디어 교육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갈등사안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미디어 교육은 대상에 따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정교육은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거나 거버넌스가 필요한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제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교육 대상에 따라서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과 시민교육이자 소비자교육, 미디어의 사용자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교육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교육학습이라는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서의 새로운 정보기술과 미디어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미디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생 동안 가르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교육시키고, ‘미디어 능력’을 갖춘 소비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Haefner, 1990, p.18). 그래서 사회교육의 핵심은 소비자교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학교교육은 미래의 사회주역인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제공하고, 스스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능력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목표는 간략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미디어교육의 범위가 이미 정치교육이나 학교교육의 보조적 기능을 넘어서 매우 다양화되었으며, 기존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복합적으로 융화되어 기능하고 있다(Moser, 1999, p. 214이하). 그러나 여전히 미디어 교육 도입을 위한 논의에서 학교교육을 위한 미디어 교육은 교육계와 미디어계가 가장 첨예하게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디어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갈등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갈등요인이 등장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와 미디어교육 진흥기관에 대한 지경이다. 미디어 교육을 현재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이 담당하려면 재교육이 필요하다. 미디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은 각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다. 예를 들어 국어교사, 과학교사, 체육교사, 국사교사 등. 그러나 이들에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미디어교육교재의 적절한 활용법을 가르치고, 또 새롭게 발전하는 뉴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할 재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와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금은 누가 마련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상 미디어교육을 위한 기금은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무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의미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영역에서의 행위자무리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나 교재출판사의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적,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서 기금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도 일종의 보조금과 바우처의 형태로 미디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또 다른 공적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에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셋째는 미디어교육기관 및 미디어교육시설에 지정 및 평가이다. 이 경우에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주체는 미디어 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얻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조정과정에서 양보를 얻기는 매우 힘든 문제이다.

넷째는 미디어교육사 김정자격 또는 교직도입에 대한 문제이다.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교육사 도입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데, 미디어의 이해를 미디어교육사의 인증은 누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만일 미디어교육사가 교직이 아닌 단순한 민간자격이라면 학교에서의 지위는 학원의 보습교사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즉 교육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미디어 교육을 기존의 일반교사가 담당할 수 있지만, 신문제작이나 새로운 뉴미디어기술을 활용한 홈페이지구성, 학교모바일 어플리케이션개발 등은 전문 강사가 담당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현상을 가르치기 위해, 미디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미디어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방법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다. 이들은 일반 다른 과목의 교사들과는 달리 미디어 현상을 스스로 판단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사’여야 한다. 미디어교육사는 미디어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교육과 더불어 미디어 제작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실습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디어교육사는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이들은 어떠한 교육과정을 거쳐 배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사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미디어교육사의 인증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내에 관련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재를 누가 제작할 것인가이다. 모든 인쇄매체와 영상매체가 생산하는 미디어상품이 모두 학교에서 교육보조교재로 사용될 수는 없다. 학교에서 공교육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검정이라는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검정과정에 참여하고, 교육교재 제작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재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리교과서나 화학교과서, 기술교과서를 물리학계와 물리학자, 화학계와 화학자, 기술학계와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여 제작하듯, 미디어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에는 교육학계와 언론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교육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면, 그들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육을 위해 학부모들에게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가정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교육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게 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서들이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결 론

1) 연구요약

‘좋은 미디어는 스스로 좋은 수업’이라고 한다. 17세기에 학교교육에서 글과 그림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했듯, 21세기에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주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자신이 대변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목표와 교육방법, 교재개발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미디어에 대한 이해, 활용 교육과 제작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교육이 정규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교육학습이라는 의미에서 평생교육이라면, 학교교육은 아직까지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서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가정교육은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반드시 가정교육의 효과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학교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운영되는 공적교육이다. 학교교육의 정책추진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교육청이 된다. 학교교육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특성상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정책추진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지원하게 될 문화체육관광부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시설 지원과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미디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정책주체인 정부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먼저 정책 주도권에 대한 경쟁보다는 선택적 조정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민간부문인 시장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목표이외에도 학교교육에서의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가장 많은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주요 이해관계자인 시장과 시민사회의 행위자무리와 다음과 같은 주요한 과제에 대해 선택적 조정을 함으로써, 접합점을 찾아 정책적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은 첫째로 사용될 교재를 제작할 주체를 정해야 한다. 둘째로 담당할 교사의 교육의 방법과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셋째로 미디어의 이해를 가르칠 미디어교육사의 인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 미디어교육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전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디어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탐색적인 이론적 연구와 이를 구체적인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형화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중인터뷰나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왜 구축되지 않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록 이론적 논의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불명확하고, 거버넌스 모델의 출발점인 신자유주의적 사회이론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는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디어 거버넌스’가 왜 미디어정책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효한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미디어교육은 1980년대부터 방송에 대한 비판적 시청 운동으로 시작하여, 꾸준히 그 방법론과 이론적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미디어교육의 성과와 역사적 경험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활용에서 미디어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인터뷰와 사례분석을 통해 내용을 이론적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차기 연구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권기현 (2008). 『전자정부와 국정관리』. 서울: 박영사.
- 김기태 · 강진숙 · 심영섭 · 지성우 (2007).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동규 · 심영섭 (2010). 『NIE 교재 현황 분석과 교과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김석준 (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김양은 (2001).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의 미디어교육의 실행모색.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장’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

- Bolz, N. (1993). *Am Ende der Gutenberg-Galaxis*, München: Wilhelm Fink.
- Bonfadelli, H. (2001). *Einführung in die Medienwirkungsforschung. Band I: Grundlagen und theoretische Perspektiven; Band II: Anwendungen in Politik, Wirtschaft und Kultur*. Konstanz: UVK Verlag.
- Denhardt, J.V. & Denhardt, R. B. (2007). *The New Public Service: Expanded Edition. Serving, Not Steering*. Armonk: M.E. Sharpe.
- DiMaggio, P. J. & Powell, W. W. (1991) (Hg.).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Donges, P. (2007). Institutionalistische Ansätze in der Medienpolitik. In: Jarren, O. & Donges, P. (Hg.), *Ordnung durch Medienpolitik?* (pp. 271-282). Konstanz: UVK.
- Glotz, P. (2001). *Von Analog nach Digital. Unsere Gesellschaft auf dem Weg zur digitalen Kultur*. Frauenfeld : Huber.
- Haefner, K. (1990). *Neue Technologien und ihre Auswirkungen auf das Bildungs- und Beschäftigungssystem*. I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Hg.), *Medien, Sozialisation und Unterricht* (pp. 11-23), Bonn.
- Hertting, N. (2006). Mechanism of Governance Network Formation: A Contextu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 Kooiman, J. (1994). Governance and Governability : Using Complexity, Dynamics, and Diversity. In: Kooiman, J. (ed.). *Modern Governance : New Governance-Society Interactions*. London: Sage.
- Kracauer, S. (1939/2004). *Werke in neun Bänden Band 7: Romane und Erzählungen*. Frankfurt a.M.: Suhrkamp.
- Luhmann, N. (1997).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Suhrkamp.
- March, J. G. & Olson, J. P. (1995). *Democratic Governance*. New York: Free Press.
- Massing, P. (2001). Bürgerleitbilder und Medienkompetenz. In: Wiesseno, G.(Hg.). *Politikunterricht im Informationszeitalter* (pp. 39-50). Bad Schwalbach: Wochenschauverlag.
- Moser, H. (1999). *Einführung in die Medienpädagogik. Aufwachsen im Medienzeitalter*.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Pierre, J. (2000). *Debating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ierre, J. & Peters, B. G. (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 Richter, R. & Furubotn, E.G., Streissler, M. (2003). *Neue Institutionenökonomik : Eine Einführung und kritische Würdigung*. Tuebingen: Mohr Siebeck.
- Sarcinelli, U. (2000). Medienkompetenz in der politischen Bildun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3, 29-38.
- Scharpf, F. W. (2000). *Interaktionsformen. Akteurzentrierter Institutionalismus in der Politikforschung*.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Schimank, U. (2000). *Theorien gesellschaftlicher Differenzierung*. (2. Aufl.)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Stoker, G. (1998). Governance as Theory : Five Proposi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 pp.17-28.
- Trappel, J. (2007). Governance-Ansätze in der Medienregulierung. In : Jarren, O. & Donges, P. (Hg.) (2007). *Ordnung durch Medienpolitik?* (pp. 253-270). Konstanz: UVK.
- Wiesseno, G. (2001). Medien im Politikunterricht. In: Wiesseno, G.(Hg.), *Politikunterricht im Informationszeitalter* (pp. 21-38), Bad Schwalbach: Wochenschauverlag.
- Zapf, W. & Dierkes, M. (Hg.) (1994). *Institutionenvergleich und Institutionendynamik. WZB-Jahrbuch 1994*. Berlin: edition sigma.

ABSTRACT

Governance Thoery as Ways of Applying a Policy for incorporating Media into Education in Digital Environment

Young-Sub Shim* · Dong-Gyu Kim**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media in education policy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and suggested some orientations and innovative ideas to a new governance in media in Educat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related literature about media in education and governance policy and drew a governance model of educational community as an analytic scheme to understand a governance approach to orientation-order-performance of Schmank. Thereafter, the study analyzed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of media in education policy, based on some criteria to operate the model, and also analyzed the policy governance in a comprehensive wa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recommendations to innovate current media in education governance as follows: ① working towards an idea of operative cooperation through reforms ② constructing a rational policy system to incorporate socio-political variables, and ③ activating cooperative governance to transform 'governing' into 'governance'.

Keywords: Media Governance, Media in Education, Orientation-Order-Performance Model, New Institutionalism

* Lecturer, Konkuk University

** Professor, Konkuk University